

# 하남시 아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6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04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# 1. 제안이유

-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위법소지의 해소, 민주주의 원칙 등을 일괄 반영·정비하여 아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나.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에 관한 규정(안 제25조)

#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###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## **7. 입법예고 결과**
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7년 2월 23일 ~ 3월 15일(2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의견없음

나. 규제개혁관련 협의 : 해당없음

## **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## 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권익가족과**

## 하남시 아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아동·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하남시의회 의장” 을 “하남시의회” 로 한다.

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사회복지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사회복지과장 최 정 호
	팀장 직위·성명	여성가족팀장 진 일 순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 새 난 (790-5662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~ ② (생략) 1. <u>하남시의회 의장</u> 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. ~ 12. (생략) ③~ ④ (생략)	제7조(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~ ② (현행과 같음) 1. <u>하남시의회</u> 가 추천한 시의원 1명 2. ~ 12. (현행과 같음) ③~ ④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) ①~ ② (생략) ③ <u>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.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인 위원장이 결정한다.</u>	제25조(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) ①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삭 제>

# 【관계법령 발췌서】

##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  2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
  3.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,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  4.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
  5.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  6.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,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,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
  7.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·지원체계 구축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(經費)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##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“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

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  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  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,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(이하 “성매매피해자등”이라 한다)의 보호, 피해 회복 및 자립·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매매,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  2. 성매매,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,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
  3.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(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)의 설치·운영
  4.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,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
  5.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  6. 성매매,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
-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, 아동·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, 범죄 조사·연구, 국제사범 공조,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.